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8. 행정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11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】

#### 가. 제안이유

개정('24. 3. 5.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제2의2호에 "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"이 신설됨에 따라,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레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2)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2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#### 가. 제정 목적

-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개정(시행 2024.3.5.)으로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제2호의2"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"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.
-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,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는 국가 안전과 국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, 그 동안 보안 관리 체계에서 도외시되어왔음.
- 개정된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1)」제7조제2의2호는 이러한 기관들을 보안
- 1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4조제1항제4 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〈개정 2024. 3. 5.〉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-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. 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협회는 제외한다.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·공립 학교
- 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[제목개정 2024, 3, 5.]

관리 대상에 포함 시켜 보안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,

 우리 구 또한 이와 같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 히 추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조무 검토

- 본 조례안은 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 이는 「사이버안보 업무 규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한 것임.
- 안 제1조(목적)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조례의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, "사이버안보 업무규정"과의 연계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함.
- 안 제2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는 마포구가 설립한 출
  자 및 출연 기관으로,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포함함.
- 사이버보안 업무의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, 적용 범위가 분명해지며, "조례로 정하는 기관"이라고 명시하여 향후 새로운 출자 및 출연기관이 추가될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종합 검토 결과

- 제정안은 2024. 3. 5. 개정·시행된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제7조제2호 의2 신설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 제정의 타당성이 있음.
- 또한, 위임 조례는 위임 내용 외에 용어 정의 등을 하는 경우 실익이 없고, 추후 법령 개정 시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어 위임 내용만 규정한 것²)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,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

<sup>2) &#</sup>x27;사이버안보 업무규정(令)'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(서울특별시 정보보안과-775호/2024.7.9.)

<sup>:</sup> 참고조례 1안과 2안을 첨부하였음. 1안 전문과 2안 제1조(목적)·제3조(출자·출연기 관의 범위)는 법제처가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시 권고한 필수 제정사항이고, 2안의 그 외 나머지 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시 자치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위하 여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제시한 사항임.

# 붙임 1 관련법령

#### ■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

**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** 법 제4조제1항제4호다 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〈개 정 2024. 3. 5.〉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-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. 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지방문화 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협회는 제외한다.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·공립 학교
- 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[제목개정 2024. 3. 5.]